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9 선고 2021가단1030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9.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5. 접수 제23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B과 아래와 같이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은행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             |              |
|-------------|--------------|
| 약정일자        | 2015. 8. 21. |
| 보증번호        | D            |
| 보증금액        | 2,000만 원     |
| 보증기간        | 2020. 8. 21. |
| 대출기관(보증상대처) | C은행 마산지점     |

나. B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2020. 8.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23. C은행에게 13,569,513원을 대위변제하고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차전8071 구상금 사건에서 2021. 2. 10. “B은 원고에게 13,789,633원 및 2020. 9. 23.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1. 2. 9. 확정되었다.

다. B은 2020. 6. 4.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13,789,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6. 4.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2020. 9. 23.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1. (1동건물의 표시)

장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도로명주소] 장원시 마산회원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83.31㎡ 2층~14층 559.79㎡ 15층 249.46㎡

지하층 37㎡(기계실)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노인

정, 공동화장실, 펌프실 34.8㎡(노인정,공동화장실) 지하 10㎡(펌프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장원시 마산회원구  대4062.5㎡

(권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3.10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062500분의 33364

-이상-

